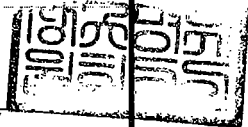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백 성 수	일명명	
	한 자	白 聖 洙	이 명	
출 생 연월일	미 상		사 망 연월일	미 상
본 직	미 상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904년 ~ 1945년			
	1908	통감부 경부, 전주경찰서 판임관 4등 7급 (대한제국직원록, 1908년)		
	1910~1913	전북 정읍경찰서 경부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1910~1913 [각년 판])		
	1914	전북 줄포경찰서 경부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1914년)		
1912.8.1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4월 24일 [부록])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호(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의병 수색 및 토벌

▶ 「高秘收 第402號 暴徒 討伐의 件」, 1909년 4월 9일, 『暴徒二關スル編冊』(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4[義兵篇VII], 113~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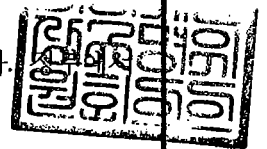
“전북 임실군 상동면의 의병장 李錫庸(일명 李學士)은 지방소요 이래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전주 등지의 각 군에서 출몰하여 양민에게 해를 끼쳤는데, 남원과 전

주 사이에서만도 그들에게 살해된 일본인이 수십명에 이른다. 토벌대는 백방으로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은 교묘히 경계선을 탈출하여 횡포를 부리고 또한 세력 부식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원서장 하기와라[萩原] 경부는 전주경찰서서 나까다[中田] 경부와 白 警部[백성수 - 작성자] 2명을 지난 3월 27일 임실군에 파견하여 白 警部 지휘 아래 전주경찰서 한인 순사 3명과 남원경찰서 한인 순사 1명으로 연합변장수색대를 조직하고 위 지역을 행동구역으로 정하고 오로지 그 수괴의 誅滅에 종사시켰다. 수색대는 4월 6일 오전 2시 임실군 下新德面 玉女峙에서 이학사가 인솔하는 약 20명의 무리들과 충돌하여 1시간 남짓 공격하고, 도주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7일 오전 10시 鯨角山에서 副將 金化瑞를 포함한 일부를 생포하고 일부를 부상시켰으며, 화승총 4정, 기타 잡품을 포획하였다. 적은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수색대는 10일부터 다시 위 지역에서 수괴 이학사의 수색을 속행할 예정이다.”

【참고사항①】 의병장 이석용에 대해

- 출전: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 827쪽.

이석용(이학사)은 전북 임실출신 의병장으로 전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참고사항②】 의병 김화서에 대해

- 출전: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2권, 502쪽.

김화서는 이석용 의병부대의 부장으로 전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 <특별법> 제2조 제3호(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의병 체포 및 신문

▶ 「全秘收 第424號ノ5 匪徒 逮捕의 件」, 1908년 6월 2일, 『暴徒ニ關スル編冊』(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1[義兵篇IV], 251쪽).

“1908년 5월 28일 우편견송인 나카오[中尾七郎]를 습격하여 참살시킨 匪徒 魯上官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한 白 警部 일행은 고산군에서 노상관을 체포하여 30일 경찰서로 돌아와 현재 취조 중에 있다. (후략)”

▶ 「警秘收 第4926號ノ1 匪徒 逮捕의 件」, 1908년 6월 6일, 『暴徒ニ關スル編冊』(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1[義兵篇IV], 254쪽).

“우편체송인 나카오[中尾七郎]를 습격하여 참살한 賊徒 노상관이 고산군에서 白 警部 일행의 손에 체포 인치되었다. 현재 취조중이다. (후략)”

▶ 「高秘收 第345號 暴徒 搜索의 件」, 1909년 4월 12일, 『暴徒ニ關スル編冊』(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4[義兵篇VII], 124~125쪽).

“(전략) 체포한 최만년을 취조하여 임실군 德樹面에서 金洞九(이학사의 부가)이 현재 화약을 제조중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1909년 3월 31일 경 김동구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한 결과 그 집 뒤편 산중에서 화약제조 현장을 발견하고 화약 5방과 총기수리용 기구 1조, 백목면 1반을 발견 압수하였다. 그러나 김동구는 포위를 뚫고 탈출하여 체포할 수 없었다. 앞서 白 警部 이하 일본인 4명, 한인 3명의 순사를 변장시켜 수색대를 조직하고 29일 오후 남원을 출발하여 곡성으로부터 순창군을 경유하여 남원, 임실의 경계를 수색한 후 남원경찰서장과 합칠 계락을 세웠다. 白 警部の 부대는 29일 오후 10시 남원군 豆洞坊에서 폭도 수괴 黃成三(전남 구례군 馬山面 출생, 32세)을 체포하였다. 그를 취조한 결과 그 날 밤 2시 구례군 古達面 주막에서 倡義大將의 인장과 격문을 압수하고, 순창군 龍洞面에 수괴 林鍾木이 잠복중임을 알아차렸다. 30일 그곳으로 향하던 도중 남원군 生鳥伐面에서 폭도 동행자 朴鍾圭(19세)를 체포하고, 계속 진행하여 적괴 임종목의 집을 포위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색대는 31일 오후 7시 순창군 덕수면에서 남원경찰서장 일행과 합하여 4월 1일 오후 7시 귀서하였다.”

【참고사항】 의병장 김동구에 대해

- 출전: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2권, 196쪽.

김동구는 전북 옥구, 남원, 임실, 순창, 태인 등지에서 활약한 의병장이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高秘收 第720號 全州警察署長 報告(1909년 6월 21일)」, 『暴徒二關スル編冊』(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4[義兵篇Ⅶ], 636~6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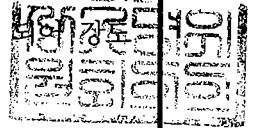
“전주경찰서 白 警部는 폭도수색을 위해 전주군 所陽面에 출장 중 지난 18일 다음의 폭도를 체포하였다.

현주소 : 군산경찰서 後洞 長在洞 通號未詳

출생지 : 전주군 所陽面 九辰里

鄭洪基(22세)

정홍기는 부하 600명을 이끄는 수괴 柳知名의 부하로서 1907년 10월 고산군에서 일본인 3명을 사살하고 1908년 1월 여산군아와 순사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흉악을 자행한 무리의 일원인데, 그 후 일본군에게 요격되어 수괴 이하가 모두 흩어졌다. 그 후 정홍기는 고산군 서면 富岩리의 자기 집으로 돌아와 연초상인이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참고사항①】 의병장 유지명에 대해

- 출전: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 779쪽.

유지명은 전북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이다. 정부에서는 1977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참고사항②】 의병 정홍기에 대해

- 출전: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3권, 537쪽.

정홍기는 전북 옥구출신으로 유지명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전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高秘收 第1344號 暴徒 出沒의 件」, 1909년 10월 11일, 『暴徒二關スル編冊』(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15[義兵篇Ⅷ], 773~774쪽).

“김제군 지방에 적의 무리 수십명이 출몰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白警部에게 순사 일부를 주어 김제, 여산 양 방향으로 파견하였다.”

▶ 『明治 42年 刑 第64號』,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의병항쟁 재판기록), 국가보훈처, 728~729쪽.

“(전략) 피고 金成吉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중략) 이상의 사실은 본 법정에서의 공술, 피고에 대한 검사 및 경부 白聖洙의 각 신문조사, 피해자 권경순 외 2명의 피해신고와 아울러 증거 물건 등에 의거하여 그 범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후략)”

【참고사항】 의병 김성길의 독립유공자 공훈기록

- 출전: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2권, 283쪽.

김성길은 양인숙 의병부대에 참가하여 전북 순창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3.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주의 식민통치하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일본정부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행위

▶ 『조선총독부관보』 제217호, 1913년 4월 24일 (부록).

한일합병후 조선총독부 경부로 재직하던 중 1912년 8월 1일 일본정부로부터 <명치 45년 칙령 제56호>에 의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1. 백성수는 1907년 일제의 한국 군대해산 후 그해 10월 체결된 <재한국 일본신민에 대한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협정서>로 실질적인 한국의 경찰권이 일제의 수중에 장악된 후에도 일본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부로 활동하면서 의병토벌에 참가했다.

1908년 전북 전주경찰서에서 경부로 재직하면서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전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이석용(李錫庸, 일명 李學士) 의병부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전주경찰서의 경찰들을 이끌고 남원경찰서의 경찰들과 연합하여 의병토벌대를 조직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4월 6일 이석용이 인솔하는 의병 약 20여명과 충돌하여 공격함으로써 일부에게 부상을 입히고 일부를 생포하였다. 그 중에는 이석용의 부장 김화서(金化瑞)도 있었다. 그 후에도 백성수의 토벌대는 퇴각하는 이석용 의병부대를 계속 추적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호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에 해당된다.

2. 백성수는 1) 1908년 5월 일본인 우편체송인 나가오[中尾七郎]를 암살한 노상관(魯上官)을 체포하여 취조하였다. 2) 1909년 3월 전라북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이석용 의병부대 의병장인 황성삼(黃成三)과 의병부대원 박종규(朴鍾圭)를 체포하였다. 3) 1909년 6월 전주에서 의병활동을 벌이고 있던 정홍기(鄭洪基)를 체포하였다. 4) 1909년 3월 체포된 의병장 양인숙의 부하 김성길(金成吉) 이하 8명에 대한 신문을 담당하였다. 김성길은 같은 해 11월 22일 광주지방법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3호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에 해당된다.

3. 백성수는 1910년 6월 경찰권 위탁각서에 의해 한국 경찰권이 완전히 일제경찰로 넘어간 후 그해 한일합병이 되어 경찰관제가 총독부 관서로 변경되는 변화가 있는 후에도 계속 경찰로 근무하면서 바뀐 관제에 따라 총독부 경부를 지냈다. 그

는 1910년에서 1913년까지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1914년 줄포경찰서에서 경부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백성수는 1912년 8월 1일 의병을 탄압하는 경찰에 재직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하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백성수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